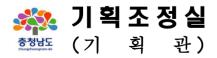


2018년 상반기

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정기감사 결과



순 서

I. 감사근거 및 개요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Ⅱ. 지적사항 등 감사결과(요약) 2
Ⅲ. 감사결과 지적사항 3
① 연구과제 수행분야 / 3
② 법인운영 분야 / 6
③ 예산운영 분야 / 8
④ 규정관리 등 기타 업무처리 분야 / 11
Ⅳ. 행정 사항14

2018년 상반기

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정기감사 결과

- ◇ '17년도 충남연구원 운영전반에 대한 상반기 정기감사 실시
- □ 도의 명실상부한 「정책연구기관」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·유도

I 감사 근거 및 개요

□ 감사 근거

- O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
- O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정관 제18조
-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운영규정 Ш-7 감사규정

□ 감사 개요

O 감사기간 : '18. 4. 23(월) ~ 4. 26(목) / 4일간

O 감 사 반 : 정책관리팀장 외 2명

O 감사방법 : 현지 출장감사

O 감사중점 : 연구사업 추진상황 등 정책감사 위주 점검

연구과제 수행분야

- · 연구과제(기본·전략·현안·수탁) 과제별 선정의 적정성
- •연구과제 활용도 및 품질 제고

법인·인사운영 분야

- ·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상황의 적정성
- ・인사관리 규정 준수 및 복무 등의 적정 관리 실태

기타 업무처리 분야

- ·규정 및 도 운영지침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이행상태
- ·이사회 및 도의회 제안사항·지적사항 조치상황
- ※ (하반기) 재정운영 상황 등 회계 및 조직운영 분야 중점 실시('18.8월 중)

Ⅱ 지적사항 등 감사결과(요약)

① 연구과제 수행 분야

연번	건 명	조치 구분
1	기본과제 연구성과 관리 소홀	시 정
2	전략과제 중 내부 제안과제 정책활용도 제고 미흡	시 정
3	현안 및 수탁과제 만족도 조사 개선	권 고
4	연구 성과물의 권장 표절률 설정·운영	권 고

② 법인운영 분야

연번	건 명	조치 구분
1	연구자문위원회 운영 부적정	주 의
2	비상임연구위원 수당 지급기준 개선	권 고

③ 예산운영 분야

연	번	건 명	조치 구분
1	1	세입예산 편성·관리 소홀	주 의
2	2	예산전용 부적정	주 의
		기금관리 업무처리 소홀	시 정

④ 규정관리 등 기타업무 처리 분야

연번	건 명	조치 구분
1	승진규정 관리 미흡	시 정
2	중대비위 발생 시 승진제한 가산 요구	권 고
3	병가관련 규정관리 소홀	시 정

Ⅲ 감사결과 지적사항

① 연구과제 수행 분야

1-1 기본과제 연구성과 관리 소홀

□ 현 황

- 기본과제는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나 정책의 기초자료 활용목적* 으로 연구자별로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 과제당 300만원의 연구 금액을 배정하여 수행
- *「충남연구원 업무수행규정」제2조
- 과제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정과의 연계성 중심으로 선정하고, 학술지 게재를 기준으로 성과평가
- 기본과제 운영방식 개선('17. 3월)을 통해 학술지 게재기한을 '당해 년도'에서 '신청 후 차년도(2년)까지'로 변경하여 유연성을 제공

<2017년 기본과제 연구성과 현황>

(단위 : 건)

계	학회지 등재	성과물 제출	성과물 미제출
34	8	17	9

□ 문 제 점

- O 기본과제 연구성과 관리 미흡
- '17년 말 기본과제 연구성과 현황에 따르면 학회지 게재 8건, 성과물 제출 17건, 나머지 9건(26.5%)은 연구 미이행 또는 성과물이 없는 상황
- 연구자별로 매년 과제가 부여되는 만큼 익년도 기본과제 및 타 연구 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당해년도 말까지 기본과제 연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학술지 게재기한(2년)과 연계·확대 적용하여 기본 과제 연구 성과물 제출 소홀

조치할 사항 시정

- ♦ 기본과제는 당해년도 내에 수행완료 및 결과물 제출
- 연구계획서 수립 시 연구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성과물 관리 강화

1-2 전략과제 중 내부 제안과제 정책활용도 제고 미흡

□ 현 황

- 전략과제는 내부 또는 외부공모 형식*으로 실시하며, 연 2회 정기 선정(상·하반기 과제 수요조사)과 수시선정으로 구분 진행
- *「충남연구원 연구업무수행규칙」제2조제3항

<'17년 전략과제 수행 현황>

(단위: 건, %)

л н		내 부			외 부 -	공 모			
구 분	계	공 모	소계	비율	도	비율	시·군	비율	비고
선정(제안)	37	22	15(60)	25%	12(30)	40%	3(30)	10%	

□ 문 제 점

- O '17년 도와 시·군에서 제안한 과제 60건 중 전략과제로 선정·수행한 과제는 15건에 불과하여 도와 시·군의 과제수요에 대한 반영도 저조
- 도 및 시·군정 정책수립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과제보다는 내부 연구진에 의한 제안과제가 다수(59%)로 성과물이 정책에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
- 내부공모에 대한 정책 수요자인 도 실·국의 의견수렴 절차 부재

조치할 사항 시정

◆ 전략과제(내부공모) 제안 시 관련 실국과 사전 조율(의견수렴)을 통한 연구결과물의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

1-3 현안 및 수탁과제 만족도 조사 개선

□ 현 황

○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인 연구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구과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피드백하고 연구평가에 활용

<연구결과 만족도(현안·수탁과제)>

(단위 : 건)

연도별	계	50% 미만	50% ~ 80% 미만	80% ~ 90% 미만	90% ~ 95% 미만	95% 이상
계	295	4	32	38	33	188
2017년	103	-	7	14	13	69
	(100%)	(-%)	(7%)	(14%)	(13%)	(66%)
2016년	97	2	12	12	13	58
	(100%)	(2%)	(12%)	(12%)	(14%)	(60%)
2015년	95	2	13	12	7	61
	(100%)	(2%)	(14%)	(13%)	(7%)	(64%)

□ 문 제 점

- O 현재 수행하고 있는 만족도 설문조사 문항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중 연구진의 협력도·성실도 등 행태에 관한 항목이 5개, 연구결과의 구체성, 체계성 등 연구의 질에 관한 항목이 5개로 구성되어 연구결과의 질 측정보다는 연구진의 행태에 치중
- 특히, 성과물의 실제 정책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항목 수준이 미흡
- 연구내용의 적합도,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정책 활용부문에 대한 평가지표를 다양화하여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 제고 필요

조치할 사항 권고

- ◆ 연구 성과물 만족도 조사의 정책 활용도 측정항목 보완·개선
- 도 및 시·군에서 제안한 전략과제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 실시

1−4 │ 연구 성과물의 권장 표절률 설정 운영

□ 현 황

O '17년 카피킬러 사용내역 및 결과

(단위 : 건)

유사율	15% 미만	15%~20%	20% 초과	비고
50	37	11	2	

□ 문 제 점

- 표절검사 프로그램의 사용은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표절률에 대한 기준 없이 연구자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
- 통상 학계에서는 인용 등을 감안해 표절률을 20%로 설정하고 있으며, 서울연구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권장 표절률(15%)을 설정
- 연구 성과물의 질 제고를 위해 적정한 기준마련 및 시행 필요

조치할 사항 권고

- ◆ 권장 표절률 설정·운영을 통한 연구 성과물의 질 향상
- 국내·외 연수에 따른 보고서의 경우에도 표절검사 프로그램 사용 의무화

② 법인운영 분야

2-1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부적정

□ 현 황

O '17.12.1. 연구자문위원 14명을 위촉하여 동년 12.19. 연구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별 20만원씩 참석수당 지급

□ 문 제 점

- 연구자문위원회는 주요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계획의 작성, 연구 과제의 평가, 발표 및 출판에 관한 사항과 기타 연구사무에 관한 자문을 실시
- (구 성) 의장(원장)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(회 의)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
- ※「충남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운영규정」제7조
- O '17년 연구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재적위원 15명 중 원장 포함 7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였음에도 회의를 개최하고 위촉직 위원 6명에게 참석수당을 지급
- 비록 심의·의결 기능이 아닌 자문성격의 위원회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운영할 의무

조치할 사항 주의

◆ 각종 위원회 개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사·의결정족수 준수

2-2 비상임연구위원 수당 지급기준 개선

□ 현 황

○ 비상임연구위원 수당은 월 3,500천원 범위 내 지급하되, 월 1,000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는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 평점 결과에 따라 원장이 결정하여 지급

<비상임연구위원 수당지급 기준>

(단위 : 만원)

평 점	100점	90~99점	80~89점	70~79점	60~69점	비고
지급액(월)	300~350	250~300	200~250	150~200	101~150	

** 배점(100점) : 경력(10), 전문성(10), 사회적 인지도(10), 업무량 및 난이도(30), 예산반영(40) / 평가자(2명) : 연구실장, 연구책임자

□ 문 제 점

○ 연구책임자와 연구실장의 평점에 따라 최대 250여만원의 지급액이 차이가 발생됨에도 수당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, 평가위원 수가 적어 판단 오류 발생가능성

조치할 사항 권고

- ◆ 비상임연구위원 수당 지급기준 보완(정량 + 정성평가 병행)
- (정량평가) 학위취득 여부, 연구경력, 관련 기술 또는 자격 여부, 연구 참여비율, 예산반영 비율 등
- (정성평가) 업무 난이도 및 전문성의 배점비율을 높이고, 평가자 수 확대

③ 예산운영 분야

3−1 │ 세입예산 편성・관리 소홀

□ 현 황

O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수입결산

(단위 : 원)

예산과목명		예 산 액	수 입 액	수입증감액	비율
사업수입	수탁용역수입	3,780,583,000	3,153,097,352	△627,485,648	83.4

□ 문 제 점

- 「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」에 따라 수입예산은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고
-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, 세출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어야 함

- 당초예산에 수탁용역사업비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규모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, 정리추경 등을 통해 수입 감소액을 반영하고, 이에 맞게 세출예산을 감조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함
- '17회계연도 수탁용역수입 6억 3천만원의 결손 발생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정리하지 않아 집행액 초과 시 자금부족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

조치할 사항 주의

◆ 수입액의 결손이 예상될 때 세입예산을 감조정하고 이에 맞게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유영의 건전성 확보

3-2 예산전용 부적정

□ 현 황

O 2017회계연도 예산 전용현황

(단위 : 원)

구	분	예산과목명	예 산 액	예산전용	비고
부	문	인건비	5,325,076,000		
정책	사업	인건비	5,325,076,000		
단위.	사업	인건비	5,325,076,000		
 편 성	성 목	712-101 급여	770,787,000	△3,000,000	
		712-901 성과급	89,650,000	3,000,000	

□ 문 제 점

-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(행정안전부)」에는 인건비 관련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인건비 관련 비목 상호 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음.
- 인턴사원 채용, 무기계약직·기간제 등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및 선택적 복지비, 정부·지방자치단체 업무위탁·대행으로 인한 관련 소요경비,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
- 인건비(100목)와 성과급(700목)은 서로 전용할 수 없는 비목에 해당 함에도, 관리직의 성과급 편성예산 부족의 사유로 인건비(급여)에서 3,000천원을 전용하여 지급
 - ※ 연구직 성과급은 49,103천원 집행잔액 발생
- 성과급 부족 시 조정률을 산정·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하거나,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 후 집행을 하였어야 함 에도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여 예산전용

조치할 사항 주의

- ♦ 예산 전용기준 준수 및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업무숙지 강화
- 성과급 부족 시 조정률 산정·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하거나,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 후 집행

3-3 기금관리 업무처리 소홀

□ 현 황

○ 기금 적립액 156억원을 하나은행('16.7.22 금고지정)에 COFIX기준금리 +0.04%의 조건으로 예치하여 운용 중

<기금 조성내역>

(단위 : 천원)

7.	분	적립총액	조 성 내 역					
- [설립시	'11년이전	2011년	2013년	2014년	
합	계	15,615,385	10,000,000	2,495,385	2,620,000	200,000	300,000	
충청 \ 출연		7,000,000	7,000,000					
시· 출연	군 금	3,200,000	3,000,000			200,000		
농어업 산업화		2,920,000			2,620,000		300,000	
자체?	적립	2,495,385		2,495,385				

□ 문 제 점

- 「충청남도 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」에 의거 기금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목적 및 사업 실정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
- 등기부등본 상 등록자산은 30억원만 등록하고 126억원은 미등록하여 연구원의 실제 적립 기금액과 등기부등본이 불일치

조치할 사항 시정

◆ 금융기관 예치금의 기금(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 제외)과 등기부 등본의 자산금액을 점진적으로 일치

④ 규정관리 등 기타 업무처리 분야

4-1 | 승진규정 관리 미흡

□ 현 황

O 관리직 승진규정

1급 이상	2급 및 3급	4급	5급 및 6급	7급	비고
3년 이상	5년 이상	4년 이상	2년 이상	1년 6월 이상	

※ 상기 기간 당해 직급에서 재직한 자 중에서 근무성적과 능력이 우수한 자임용 원칙

O '17년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

개최일자	부 의 안	대 상 자	인사위원 심의결과	원 장 최종결재
<i>'</i> 17. 5. 29.	승진임용	승진동의 2명 (연구직 2)	승진동의 2명	승진 2명
'17. 6. 11.	승진임용	승진동의 1명 (관리직)	승진동의 1명	승진 1명

□ 문 제 점

- 「충남연구원 인사관리규정」제19조에 관리직에 관한 승진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나, 연구직에 관해서는 별도의 승진 규정 없이 동 규정 별표(직급별 채용자격 기준)를 준용하여 승진인사 실시
- 특히, 관리직의 경우에도 승진규정과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이 상이* 하게 운영 중으로 연구직 승진기준을 채용자격 기준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부적절
- * 관리직 5급 및 6급(승진 2년, 채용 3년), 7급(승진 1년 6월, 채용 기준없음)

조치할 사항 시정

◆ 인사관리규정 제19조(승진)에 연구직에 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승진기준 마련 시행

4-2 중대비위 발생 시 승진제한 가산 요구

□ 현 황

-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강등·정직(18월), 감봉(12월), 견책(6월)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에서 제외
 - ፠「충남연구원 인사관리규정」제21조(승진의 제한)

□ 문 제 점

- ○「지방공무원법」제69조의2제1항 및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3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대비위 발생 시 승진제한 기간을 가산
-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성희롱·성폭력으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적용

조치할 사항 권고

♦ 중대 비위자에 대한 승진제한 가산(6개월) 등 제재 강화

4-3 병가관련 규정관리 소홀

□ 현 황

- 원장은 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충청남도 조례를 준용하여 연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
-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, 병가 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
- ※「충남연구원 인사관리규정」제36조

□ 문 제 점

- O 병가 실시에 따른 연가일수 공제에 관한 규정 미비
-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17조제4항제4호 및「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제18조제4항에는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
-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에서 공제 처리
- O 개인연가 소진 후 의사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는 6일 이내 병가를 연간 6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 발생으로 병가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음

조치할 사항 시정

- ◆ 병가에 관한 연가일수 공제 사항 규정 마련·시행
- 인사관리규정에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 첨부토록 규정하여 병가제도 악용사례 방지

₩ 행정 사항

- 상반기 정기감사 조치결과(이행계획) 제출 : '18. 6. 29.까지
-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사항(증빙서류 첨부) 제출